

(의안번호 제2694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10. 06.

고성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10. 12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3. 10. 18. 산업경제위원회 상정·원안기결

2. 제한이유

가.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위탁기간이 2023. 12. 31.로 만료됨에 따라
위탁 사업자 재 선정, 계약이 필요

나. 석면 관리의 전문성, 안정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3. 위탁근거

가. 「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 제4조

나. 2020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

4. 위탁사무

가. 위탁사업명: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

나. 위탁기간: 2024. ~ 2026.(3년)

다. 총 사업비: 2024년 기준 1,664,000천원(2025.~2026. 사업비 미확정)
(국비50%, 도비15%, 군비35%)

라. 위 탁 비: 총사업비의 8%

마. 위 탁 방 법: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

바. 위 탁 내 용:

-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추진계획 수립·시행
- 슬레이트 철거·처리 및 지붕개량 공사업자 선정 및 계약
- 슬레이트 철거 면적조사 수행
-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설치 공사현장 감독 등

5. 추진일정

- 슬레이트 처리 처리사업 위수탁 사업자 모집 공고 : 2024. 2월
- 제안서 접수 및 평가 : 2024. 2월 ~ 3월
- 수탁업체 선정 : 2024. 3월
- 위·수탁 계약 체결, 공증·공고 : 2024. 3월

6. 기대효과

- 석면관리 전문업체의 공사감독 및 관리로 효율성 및 안정성 증가
- 면적조사 및 철거 감독 등 행정업무 부담 완화

7. 전문위원 검토요지

○ 제출 사유

- 본 동의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,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위탁기간 만료(2023.12.31.)로 인한 위탁사업자 재선정을 위해 「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되었음.

○ 주요 내용

- 위탁사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.

[참고] 위탁사무 개요

- 위탁근거: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
 - 지방자치단체 직접 추진 또는 석면관련 전문성을 가진 법인, 단체 등에 위탁
- 위탁사무: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
 -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추진계획 수립·시행
 - 슬레이트 철거·처리 및 지붕개량 공사사업자 선정 및 계약
 - 슬레이트 철거 면적조사 수행
 -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설치 공사현장 감독 등
- 위탁기간: 2024 ~ 2026년(3년간)
- 총사업비: 2024년 기준 1,664백만원(국비 50%, 도비 15%, 군비 35%)
 - ※ 2025 ~ 2026년도 사업비 미확정
- 위 탁 비: 총 사업비의 8%(경남도 내 18개 시·군 동일)
- 위탁방법: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

○ 종합검토 의견

-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, 위탁근거 및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부합되며, 위탁사무 수행의 전문성 및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석면 관련 전문성을 가진 업체 등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 됨.

8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9. 토 론 : 없음.

10. 심사결과 : 2023. 10. 18. 원안가결 함.